□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

○ 선천적으로 난청을 안고 태어난 아기들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으므로 조기 진단을 거쳐 재활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할 수 있는 선천성 난청으로 난청 검사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
○ 선천성 난청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청력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. 주로 유전적인 요인, 임신부의 풍진 감염 및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, 약물 중독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.

○ 조기에 선별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난청 여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2.5세는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.

○ 부모가 먼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.

○ 정부에서는 이러한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언어 지능 발달장애 및 사회 부적응 등을 예방,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○ 옥천군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.

1. 난청 검사비 지원

가.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영아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((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)

나. 소득요건 판정기준

o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
【2020년 가구원수·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판정 기준표】

(단위:원)

가구원수	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180%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직장가입자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지역가입자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혼합)
2인	5,386,000	180,237	185,031	183,101
3인	6,967,000	233,076	249,194	237,652
4인	8,549,000	286,647	308,952	298,124
5인	10,130,000	343,406	368,522	368,580

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: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(건강보험료 문의 1577-1000)

다. 지원내용

o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에 한해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. (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)

o 청각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하며 (ABR 본인부담금), 난청 확진아에게 131만 원 한도 내의 보청기도 지원되니 참고하세요. 단,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되지 않아요!

2. 보청기 지원

가.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(36개월 미만) 영유아를 선정하며, 양측성 난청이라면 청력이 더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5~59dB로,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.(다자녀 가구의 영유아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)

나. 지원내용은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 원(131만원 한도)

다. 유의사항

-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(ABR)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(ASSR)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(ABR반드시 포함)
-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에 인정
-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,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
-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함

3.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신청 방법은?

o 보건소를 통해 발급받은 쿠폰을 가지고 검사 기관에서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를 시행 한 후 이후 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 사업 지원팀에 검사비를 청구하고 보건소로 청구내역을 통보, 이후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.

o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구 분	구 비 서 류
신청자 (공통)	- 지원 신청서 1부 -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, 검사결과지 각 1부 -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 -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※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해당자(추가)	- (휴직자) 휴직증명서 1부(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) *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- (필요시)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) 1부